

언론은 '친밀'과 '모욕'을 구별 못하나

드러내놓고 문제삼기엔 체면과 불이익이 두렵고 그냥 지나치기엔 불쾌하고 모욕적인 성희롱 문제가 사법적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92년 5월부터 서울대 조교인 우모씨가 지도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고 폭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이에 지도교수 신씨는 우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우씨는 신교수와 서울대 총장및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냄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의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됐던 것이다.

서울민사지법은 4월18일 "피고 신교수는 원고 우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을 조선일보는 1면 머릿기사(4.19)로 내보내는 등 각 일간지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나타냈다.

이 판결이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닌 단순한 성희롱에 대해 내려진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4.19 한겨레 사회), '남성위주의

성문화에 대한 경중'(4.19 조선 사회), '직장에서의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등을 문제삼지 않았던 관행에 췌기를 박은 것'(4.18 중앙 사회) 등 남성중심의 직장문화에서 여성의 권익을 적극

경실련 신문 비평

성희롱 사건

본질 호도·희화화 일색에 아연

'여직원 근처에 가지 말라' '책임은 남성만의 것일까'

보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다수 신문은 사건을 희화화하고 호도하는 기사를 앞다투어 보도, 여성문제에 대한 단견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또한 성희롱 문제의 원인이나 진단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의 사례를 나열하거나(동아 4.19사회), 성희롱의 개념과 한계만을 부각시켜('성희롱 개념, 한계 논란 분분' 4.21 한국 사회) 문제의 주변만 맴도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이제 여성을 성의 객체로만 보아왔

던 관념들은 모두 쓸어내야 할 때이다'(4.20 한겨레 사설),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희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4.19 동아 사설)등은 이 사건에 대해 비교적 바른 시각을 보여준 반면, '직장마다 성희롱 논란, 걱정', '여직원 근처에 가지 말라'(4.20 한국 사회), '남성들 여직원

조심'(4.19 동아 사회)등의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사건을 호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조선일보는 '남성들이여, 오로지 사무적이 되어 조심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4.20 만물상), '남성 3불 시대 -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남성들은 이제 여자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3대 금기사항이 유행어처럼 퍼졌다.'(4.19 사회)는 등 사건 자체를 '즐긴다'는 인상까지 풍겼

다. 다른 일간지도 이와 비슷한 보도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농담이며 접촉일까. 친밀도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성만의 것일까'(4.19 중앙 사설)는 등 오히려 남성이 피해자인 듯한 인상의 보도와 '적당한 농담과 손버릇을 당연히 해온 남성위주의 사회분위기나 직장풍속도도 앞으로는 차츰 고쳐지지 않을 수 없겠고, 어찌 보면 한결 딱딱해질 수도 있겠다.'(4.19 한국 상설)는 등 친밀감의 표현과 모욕적 언동을 구별못하고 더 나아가서 언론이 사건자체를 희롱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했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성 문제는 거론조차 금기시 돼왔던거 사실이다. 남성위주의 성문화속에서 성폭력, 성추행의 문제가 여성의 인권과 맞물려 제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권리가 신장됨에 따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계속 제기될 것이다. 여성이 단지 성적대상이 아니라 동료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그 과정의 하나로 이번 법정의 성희롱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경실련 신문비평 모임 정리 박명숙 간사